

'96산림관계법령정비계획과 추진상황

산림청 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최병훈

I. 배경 및 추진계획

현행 산림법은 산림황폐기인 1961년에 제정되어 조림·녹화를 위한 보호·규제위주일 뿐만 아니라 1961년 산림법 제정 이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유사법의 통합과 산림조합법을 분리하는 등 1980년 1월 4일 산림법 전문개정을 비롯하여 그동안 총 18번에 거친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 다기하게 되었다.

특히, 임정의 전환기에 부응하고 산지의 자원화·임업의 산업화·산림의 공익화를 추진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여 1996년 산림관계법령정비계획으로 산림에 관한 기본정책과 수단을 제시할 「산림정책기본법」과 사유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임업진흥촉진법」, 국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국유림경영법」 등 개별법을 마련하고,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속에 산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하며, 수렵보호성역화와 수렵면허발급

제도개선을 위한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산촌진흥법등 기타 산림관련 법률들은 연차적으로 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I.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 산림법 개정

○ 추진상황

산림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와 1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지난 7월에 산불종합대책과 관련한 2차 관계부처협의를 마치고, 8월에는 경제장·차관회의를 통과하여 9월~10월 중순까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달안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개정이유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임야의 매매를 자우롭게 하기 위하여 검인제도와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대책본부와 산불진화대를 설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행정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국민 속의 산림행정규현
 - 임산물반출시 검인찍기 및 생산화인표 폐지
 - 임야매매증명제도 폐지
 - 채석단지로 지정될 경우 채석허가를 폐지하고 신고로 대체
- 국민편의제공을 위한 제도도입 확대
 - 분수림설정대상을 조림·과수에서 관상수재배까지 확대
 - 산림형질변경지중 타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면제
- 매년 증가하는 산불의 다발화·대형화에 효율적 대처
 - 산불대책본부 및 산불진화대 설치
 - 산불예방행동지침 및 산불관리통합지침 제정
 - 불을 가지고 입산하는 경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타부처의 정비희망사항 및 법제처 발굴정비사항 반영
 - 토사채취허가와 시행령에 규정한 토사채취제한 근거 마련
 -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등의 지정해제사유를 구체화
 - 시행규칙에 규정한 산림형질변경

지 적지복구설계서 승인근거 마련 등

□ 임업진흥촉진법 제정

○ 추진상황

임업진흥촉진법안은 1995년 9월 입법예고 및 부처의견조회와 1995년 10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년들어서 지난 6월에 관계부처와의 재협의를하여 8월에 2차에 거쳐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9월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경제장·차관회의를 거쳐 10월 15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이달하순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정이유

전국 산림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임업진흥권역 중심으로 경영구조 등 임업구조를 개선하여 산림소유자의 자율경영능력과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

-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업 또는 대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있는 임업경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겸업·전업 및 기업임업 육성
- 임업의 산업화를 위하여 소유구조·경영구조 및 유통구조 등 임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 산림의 계획적 경영을 위하여 임업진흥권역을 지정·관리
- 산림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임업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산림법의 산림개발기금 관련조항 삭제

□ 산림정책기본법 제정

○ 추진상황

산림정책기본법안은 지난 7월에 법안에 대한 자체심의회의와 대학교수와의 간담회를 거쳐 8월에는 입법전문단체인 법제처 소속 한국법제연구원의 심도있는 검토를 마치고 10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에 입법예고 및 경제장·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년내에 법제처 심사까지 마치고 '97상반기 임시국회 제출목표로 추진중이다.

○ 제정이유

산림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문화적 기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산림정책의 장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본 법의 목적은 산림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증진을 도모하고, 국토보전, 국민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규정
- 정부는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현재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본 법의 기본이념으로 제시
- 정부는 산림과 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산림정책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산림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
- 모든 국민 특히 산림소유자 등은 산림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산림시책에 협력하고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는 매년 주요 산림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정부는 임업투자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정부는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림 문화창달에 필요한 시책 강구
- 정부의 주요 산림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심의회 설치 등

Ⅲ. 기타 산림관계법령 제·개정

국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국유림경영법」 제정은 법안을 성안하여 검토중이며, 1997년 입법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면허발급제도 개선 등을 위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은 개정안을 확정하여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연내에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마치고 1997년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관계법 체계

산림정책기본법

(임업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기본계획
- 임업구조의 개선
-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 산촌종합개발
- 산림문화장달, 국제협력촉진
- 산림정책심의회 설치

私有林經營 促進法

(임업진흥촉진법)

- 소유·경영·유통구조개선 등의 육성
- 임업진흥권역 지정·육성
- 임업진흥기금 설치 등

國有林經營法

(국유림경영법)

- 국유림의 경영목표 및 원칙
- 국유림의 교환·매각·매수
- 국유림의 대부
- 국유림의 산물매각
- 분수림 설정 등

林道施設管理 에 관한法律

(임도관리법)

- 임도기본계획
- 임도정비 및 사업계획
- 임도노선지정
- 토지 등의 수용
- 통행의 금지·제한 등

山村振興法

(산촌개발촉진법)

- 산촌진흥기본원칙
- 산촌진흥지역 지정
- 산촌진흥계획 수립
- 산촌진흥심의회
- 정부지원 등

山林環境保護法

(산림보호법)

-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지표
- 도벌·산불 등 산림보호
- 야생동식물 보호
- 산림병해충방제

山地保全 및 利用 에 관한法律

(산지관리법)

- 산지이용기본계획
- 산지관리지침
- 산지전용허가
- 전용타당성 평가제
- 산지관리위원회 설치

山林法

- 산림계획 (기본·지역·영림)
- 산림자원조성 (종묘·조림·육림)
- 임산물수입
- 임산물이용
- 임업기술개발 연구

其他

- 임업협동조합법
- 사방사업법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임목에관한법률
- 천연산림보호지역원배치에관한법률
- 화전정리에관한법률